

박형준 / 4월 / 기초GS Plus / 10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55791	19.5	10.5	0	0	30	1	0.58%	5	173
556532	17.5	12	0	0	29.5	2	1.16%	4	
557114	17	12.5	0	0	29.5	2	1.16%	4	
557746	16.5	10.5	0	0	27	4	2.31%	4	
556312	14.5	12	0	0	26.5	5	2.89%	5	
556325	17.5	9	0	0	26.5	5	2.89%	4	
556232	16	10.5	0	0	26.5	5	2.89%	5	
556214	16	10	0	0	26	8	4.62%	4	
556604	20.5	5.5	0	0	26	8	4.62%	4	
555312	15	10.5	0	0	25.5	10	5.78%	4	
551074	16	9	0	0	25	11	6.36%	5	
556416	16.5	8.5	0	0	25	11	6.36%	4	
556559	16	9	0	0	25	11	6.36%	5	
554881	14	10.5	0	0	24.5	14	8.09%	4	
556213	15.5	9	0	0	24.5	14	8.09%	5	
555790	14	10	0	0	24	16	9.25%	4	
556321	14.5	9.5	0	0	24	16	9.25%	4	
556626	17.5	6.5	0	0	24	16	9.25%	5	
556239	14	10	0	0	24	16	9.25%	4	
556958	17	6.5	0	0	23.5	20	11.56%	4	
557035	15	8.5	0	0	23.5	20	11.56%	5	
556203	14.5	8.5	0	0	23	22	12.72%	5	
556386	14.5	8.5	0	0	23	22	12.72%	4	
556511	14.5	8.5	0	0	23	22	12.72%	4	
557147	14.5	8.5	0	0	23	22	12.72%	4	
554903	15.5	7	0	0	22.5	26	15.03%	4	
556205	13.5	9	0	0	22.5	26	15.03%	4	
556368	15.5	7	0	0	22.5	26	15.03%	4	
556536	14.5	8	0	0	22.5	26	15.03%	4	
556785	13.5	9	0	0	22.5	26	15.03%	5	
556044	14.5	7.5	0	0	22	31	17.92%	4	
556431	12	10	0	0	22	31	17.92%	4	
556471	14.5	7.5	0	0	22	31	17.92%	5	
556991	14.5	7.5	0	0	22	31	17.92%	5	
558116	14	8	0	0	22	31	17.92%	5	
551046	16	5.5	0	0	21.5	36	20.81%	4	
554589	14.5	7	0	0	21.5	36	20.81%	4	
556282	15.5	6	0	0	21.5	36	20.81%	5	
556473	14.5	7	0	0	21.5	36	20.81%	5	
556448	13.5	8	0	0	21.5	36	20.81%	4	
557184	12.5	9	0	0	21.5	36	20.81%	4	
556219	11	10	0	0	21	42	24.28%	4	
556305	14	7	0	0	21	42	24.28%	4	
556380	12.5	8.5	0	0	21	42	24.28%	4	
556423	14.5	6.5	0	0	21	42	24.28%	4	
556714	14.5	6.5	0	0	21	42	24.28%	5	
556236	14.5	6	0	0	20.5	47	27.17%	4	
556298	11.5	9	0	0	20.5	47	27.17%	4	
556320	13.5	7	0	0	20.5	47	27.17%	5	
556436	13.5	7	0	0	20.5	47	27.17%	4	
556703	18.5	2	0	0	20.5	47	27.17%	4	
558879	12.5	8	0	0	20.5	47	27.17%	4	
556668	12	8.5	0	0	20.5	47	27.17%	5	
556776	14	6.5	0	0	20.5	47	27.17%	4	
556337	13.5	6.5	0	0	20	55	31.79%	4	
556479	11.5	8.5	0	0	20	55	31.79%	5	
556543	13	7	0	0	20	55	31.79%	5	
556594	11.5	8.5	0	0	20	55	31.79%	4	
556747	12.5	7.5	0	0	20	55	31.79%	5	
557007	12.5	7.5	0	0	20	55	31.79%	4	
554737	14.5	5	0	0	19.5	61	35.26%	5	
555866	12	7.5	0	0	19.5	61	35.26%	4	

556302	12	7.5	0	0	19.5	61	35.26%	5
556324	15	4.5	0	0	19.5	61	35.26%	5
556408	10	9.5	0	0	19.5	61	35.26%	4
556412	12	7.5	0	0	19.5	61	35.26%	4
556434	11.5	8	0	0	19.5	61	35.26%	4
557029	16	3.5	0	0	19.5	61	35.26%	4
559611	15.5	4	0	0	19.5	61	35.26%	4
556260	11	8.5	0	0	19.5	61	35.26%	4
556878	9.5	10	0	0	19.5	61	35.26%	4
556905	10	9.5	0	0	19.5	61	35.26%	4
555314	13	6	0	0	19	73	42.20%	5
555801	11.5	7.5	0	0	19	73	42.20%	4
556043	12	7	0	0	19	73	42.20%	4
556333	11.5	7.5	0	0	19	73	42.20%	5
556359	13	6	0	0	19	73	42.20%	4
556397	12	7	0	0	19	73	42.20%	4
556409	14	5	0	0	19	73	42.20%	5
559375	14	5	0	0	19	73	42.20%	4
556443	12.5	6.5	0	0	19	73	42.20%	5
556881	14	5	0	0	19	73	42.20%	4
557212	12	7	0	0	19	73	42.20%	4
557623	12	7	0	0	19	73	42.20%	4
556382	13	5.5	0	0	18.5	85	49.13%	4
556383	11	7.5	0	0	18.5	85	49.13%	4
556482	13	5.5	0	0	18.5	85	49.13%	5
556500	9	9.5	0	0	18.5	85	49.13%	5
556564	11	7.5	0	0	18.5	85	49.13%	4
556693	11.5	7	0	0	18.5	85	49.13%	4
557637	12.5	6	0	0	18.5	85	49.13%	4
557659	12	6.5	0	0	18.5	85	49.13%	5
557679	11	7.5	0	0	18.5	85	49.13%	5
559135	14	4.5	0	0	18.5	85	49.13%	4
554631	13	5	0	0	18	95	54.91%	5
556161	18	0	0	0	18	95	54.91%	5
556329	13	5	0	0	18	95	54.91%	4
556358	12.5	5.5	0	0	18	95	54.91%	5
556399	13	5	0	0	18	95	54.91%	5
556494	12.5	5.5	0	0	18	95	54.91%	4
556728	13	5	0	0	18	95	54.91%	4
556734	13	5	0	0	18	95	54.91%	4
556294	13	4.5	0	0	17.5	103	59.54%	4
558038	15.5	2	0	0	17.5	103	59.54%	4
556545	10.5	7	0	0	17.5	103	59.54%	4
556616	11	6.5	0	0	17.5	103	59.54%	4
557062	13.5	4	0	0	17.5	103	59.54%	4
554553	11	6	0	0	17	108	62.43%	4
554633	12	5	0	0	17	108	62.43%	4
556071	12.5	4.5	0	0	17	108	62.43%	4
556360	14.5	2.5	0	0	17	108	62.43%	4
556445	12	5	0	0	17	108	62.43%	4
556481	14.5	2.5	0	0	17	108	62.43%	4
556777	11.5	5.5	0	0	17	108	62.43%	5
557152	13	4	0	0	17	108	62.43%	4
556513	14	3	0	0	17	108	62.43%	5
556342	10	6.5	0	0	16.5	117	67.63%	4
556499	12.5	4	0	0	16.5	117	67.63%	4
559560	13	3.5	0	0	16.5	117	67.63%	4
556609	11.5	5	0	0	16.5	117	67.63%	4
556833	8.5	8	0	0	16.5	117	67.63%	4
557110	10	6.5	0	0	16.5	117	67.63%	4
556483	7	9	0	0	16	123	71.10%	4
556809	12	4	0	0	16	123	71.10%	5
559826	12.5	3.5	0	0	16	123	71.10%	4
556377	10	5.5	0	0	15.5	126	72.83%	4
556926	14.5	1	0	0	15.5	126	72.83%	4

554654	9.5	6	0	0	15.5	126	72.83%	5
556430	13	2	0	0	15	129	74.57%	4
556748	10	5	0	0	15	129	74.57%	4
551072	9.5	5	0	0	14.5	131	75.72%	5
555788	9	5.5	0	0	14.5	131	75.72%	4
556928	10.5	4	0	0	14.5	131	75.72%	4
556429	11.5	2.5	0	0	14	134	77.46%	4
556557	7	7	0	0	14	134	77.46%	4
556741	8.5	5.5	0	0	14	134	77.46%	4
556845	10	4	0	0	14	134	77.46%	4
556969	8	6	0	0	14	134	77.46%	4
556234	8.5	5	0	0	13.5	139	80.35%	4
556341	10.5	3	0	0	13.5	139	80.35%	3
556691	13.5	0	0	0	13.5	139	80.35%	4
556825	10	3.5	0	0	13.5	139	80.35%	4
557085	9	4.5	0	0	13.5	139	80.35%	4
557156	7.5	6	0	0	13.5	139	80.35%	4
555785	7.5	5.5	0	0	13	145	83.82%	4
556704	7.5	5.5	0	0	13	145	83.82%	4
555946	11	1.5	0	0	12.5	147	84.97%	4
556432	12.5	0	0	0	12.5	147	84.97%	4
556475	10.5	2	0	0	12.5	147	84.97%	5
556906	7	5.5	0	0	12.5	147	84.97%	4
556631	12.5	0	0	0	12.5	147	84.97%	5
557685	12	0	0	0	12	152	87.86%	4
556497	12	0	0	0	12	152	87.86%	5
555692	7	4.5	0	0	11.5	154	89.02%	4
556421	7.5	4	0	0	11.5	154	89.02%	4
557533	7	4	0	0	11	156	90.17%	4
555807	10.5	0	0	0	10.5	157	90.75%	4
556301	8.5	2	0	0	10.5	157	90.75%	4
558092	5.5	5	0	0	10.5	157	90.75%	4
556569	10.5	0	0	0	10.5	157	90.75%	5
556151	9.5	0	0	0	9.5	161	93.06%	4
556189	9.5	0	0	0	9.5	161	93.06%	4
556414	8.5	1	0	0	9.5	161	93.06%	4
556336	7	2.5	0	0	9.5	161	93.06%	5
556311	6	3	0	0	9	165	95.38%	3
556357	7	2	0	0	9	165	95.38%	4
556388	6	3	0	0	9	165	95.38%	4
556316	8.5	0	0	0	8.5	168	97.11%	4
556588	6	2.5	0	0	8.5	168	97.11%	4
557238	5.5	1.5	0	0	7	170	98.27%	4
554611	6	0	0	0	6	171	98.84%	5
557191	4.5	0	0	0	4.5	172	99.42%	4
556869	4	0	0	0	4	173	100.00%	4

박형준/4월/기빨GS/10회/1번	채점자
	윤영우
<p>1. 전반적인 총평</p> <p>각 설문에서 모두 조치를 묻고 있어, 조치를 충분히 압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소 당황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에서 을의 행위가 갑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침해 여부 자체를 별도로 검토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p> <p>사전적 조치, 민사적 조치, 형사적 조치, 기타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작성한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p> <p>(2) 설문 2</p> <p>마찬가지로 여러 조치를 다각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설문이었습니다.</p> <p>다만 소진이론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특허권자가 직접 제조·판매하고 있는 경우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p> <p>(3) 설문 2</p> <p>일부 답안은 신규성 위반을 결론으로 제시하였으나, 본 사안은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규성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p> <p>진보성 위반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문제의 취지상 진보성의 일반론을 장황하게 서술하기보다는 당연무효, 권리범위 부정, 권리남용, 자유기술 주장 등에 보다 비중을 두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p>	

(4) 설문 4

정정의 재항변을 사안에 포섭할 때에는 단순히 정정의 재항변을 시도한다고만 서술하기보다는, 예컨대 발명 A+B+D로 정정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발명 A+B+C로 정정한다고 작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3. 소결

조치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누락한 조치들은 기본서에 표시해 두고,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박형준/4월/기뿔GS/10회/2번</p>	<p>채점자</p>
	<p>윤영우</p>
<p>1. 전반적인 총평</p> <p>문제-3과 마찬가지로 조치를 물어보는 설문들로 구성된 문제였습니다.</p> <p>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p> <p>(1) 설문 1</p> <p>설문 1에서 존속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 조치를 서술한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는 설문 2에서 비로소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문 1은 아직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p> <p>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제조행위와 보관행위의 침해 여부와 조치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2) 설문 2</p> <p>존속기간 만료 전과 만료 후를 구분하여, 각 시점별로 침해 여부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나누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p> <p>다만 시간 부족으로 끝까지 서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시간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p> <p>3. 소결</p> <p>문제 1, 2를 통틀어 조치를 서술함에 있어 목차만 작성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결론이 맞더라도 해당 배점을 모두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p> <p>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목차를 제시하셨다면, 그에 따른 내용까지 반드시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p>	

4.5

[문제 - 1]

I. 2018 1. - 침해권주사 특허권과 조지.

1. 사전적 조지

서면 경고, 침해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300조), 가압류(민사집행법 276조), 공개보전(특허법 151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135조)

2. 민사적 조지

(1) 침해금지청구 - 法 126조 ①항, ②항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청구 할 수 있으며 이의 침해를 방지, 실효 제지,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 - 法 126조 ①항, ② ~ ④항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으며 이의 손해액 산정 등 ②항 ~ ④항에 따른 손해액 추정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3) 신용회복청구(法 131조), 부당이익 반환청구(민법 741조)도 행사할 수 있다.

3. 형사적 조지

침해죄 고소 (특허법 225조), 몰수 (231조), 양벌규정 (230조)를 고려해볼 수 있다.

4. 기타 조지



회해, 조경, 중재, 특허권 양도, 실시권 설정도 행사가능하다

3 II. 식은 2. - 침해 관계 실시권과 권리

1. 침해 정도 타당성 및 공간

실시권자는 실시 중당한다.

2. 특허권 하자 검토 관련

상행위인 과오 하자를 검토하여 하자가 있을 시 하자관련 항변, 무효사유에 따른 심판청구, 포기 권유할 수 있다.

3. 실시 허락,

특허권으로부터 실시권 허락을 받는다.

4. 특허권 양도

특허권은 양도 받고 제이해받을 수 있다

5. 동등실시허락심판 - 법 138조 1항

Z는 A+B+C를 독자적 발명 후 제조, 판매 하고서, ~~출원하여~~ ~~중지에대수강을~~ ~~출원한~~ ~~출원~~ ~~수원~~ 증명한 출원하여 등록받아 이동명제에 따른 동등실시허락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특허권과 A+B 제조 후 판매 시 소견.

Z이 A+B를 구매하여 A+B+C를 발명하는 것에 소견이론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II. 식권 3.

1. 특허발명 허가 정도

(1) 신규성 - 法 29조 ①항

그이 선행발명 (A) 와 2(B)를 발견하였지만 이로써 甲의 특허발명 A+B는 신규성 부정되지 않는다.

(2) 진보성 - 法 29조 ②항

각 선행발명이 의해 결합관계로 구성된 甲의 A+B 발명은 진보성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다.

2. 허가 있으면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法 133조, 신속심판 후 소명증자신청을 할 수 있다. (法 164조)

3. 당원판-취제시 및 시안적용

특수된 특허는 무효심판 심결 ~~정~~ 확정 전,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기에 2은 甲의 무효성을 주장해 무효라고 주장 불가하다.

4. 권리범위 부정- 취제시 및 시안적용

특허발명은 권리범위 정할시 2은 시 가충수준 고려하고 신규성 부정시 권리범위는 당원 부정되나 진보성부정시 권리범위 부정안된다



그은 甲의 권보성 위반으로 권리범위 부정인된다.

5. 권리범용 - 부인설

(1) 종래 판례

권보성 있는 경우 법원이 소송에서 권리범위 부정할 수 없이 권보성 판단하면 안된다고 한다.

(2) 최근 판례

권보성 있는 특허발명을 특정·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면 정외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익 부당하게 훼손시키며 특허법 목적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하여 무효성 및 확정 전이라도, 특허발명 권보성 부정되어 무효로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고 항해소용법정도 권보성 여부에 미치지 않음, 판단할 수 있다고 판례한 바 있다.

(3) 소안

그은 甲의 권보성 위반으로 침해금지처분청이 권리범용이라 주장할 수 있다.

6. 개위개수 항변 고려

A+B+C가 A+B 권보성 위반으로 개위개수에 대한 주장을

서로 배 배수 있다. 음인항해이기도 마찬가지다

Good

1. 특허권 포기, 소취하 권위 등 기타 조항
그는 무효성을 들어 포기나 소취하 권위를 해박수 있다.

4.5

IV. 식문 4.

1) 주장 타당성 검토

상항발명 각각으로 A+B가 진보성 부정되는지 확인한다

2. 진보성 부정되면

(1) 무효성을 주장할 수 있음 - 공제 판례를

(2) 전항 판례 방문.

권리내용 항면 앞을 시 정정항으로 정정되면 무효성이 해소되거나
해소할 수 없다는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3) 사안적용

특이 A+B+D는 진보성 있고, 그의 실시발명 A+B+C를 이에
특이 정정한 후에 권리항변을 주장하며 정정 재항변을 주장해
볼 수 있다.

3. 진보성 인정시



(1) 결합발명 진보성 판단

각 구성이 공지된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구성의 큰관성을 판단하고 판단도 고려한다.

(2) 선행발명 양식·종기 판단

결합에 대해 선행발명에 양식·종기 등이 제시되거나 출원시 동등의 기능이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 선행발명으로 진보성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시인.

특허ATF 발명은 각 선행발명 공지로 바로 진보성 부정되지 않고 앞서 이미 대해 종기·양식도 만든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문제-2]

I. 선 1.

1. 실시행위 독립 여부

각 실시행위 및 청해 여부를 판단한다.

2. 제조 행위

그 이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 제조한 행위는 존속기간 후 판재한다 해도 청해이며, 이를 인식하고 있어 고의 있다.

3. 보전 행위

보전하는 행위는 특수 고소 또는 특수 가독에 의한 신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침해행위이다.

4. 제조행위 침해에 대한 조치

(1) 침해금지청구 - 특수 126조 ①항, ②항

특기간 만료 전 행위가 대해서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침해행위 제거,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하다

(2) 손해배상청구 - 특수 128조 ①항, ②항 ~ ④항

무엇 그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고 판액선정권이라

특수 128조 ③항, ④항 규정 적용 안되더라도 ⑤항 규정 적용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 특수 128조 ⑥항

고의 침해행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4) 침해죄 고소 - 특수 225조.

고의 침해행위로 행위죄로 침해죄 고소 가능하다.

5. 보전행위에 대한 조치

침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 특수 126조 ①항 후단

45

2. 관 2

1.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 - 1차 88조 1항
장래로 소멸하고 이후 자유기술로 본다.

2. 존속기간 만료 전후 행위에 대한 항해 여부

(1) 만료 전

2의 제1항의 특허 존속기간 만료 전 실시된 것으로 만료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 만료 후

항해 아니다.

행위에 대한

3. 존속기간 만료 전 조취

(1) 침해금지청구

존속기간 만료 후 이미 소멸된 특허권으로 침해금지나
침해를 제기할 수 없게 청구가 불가하다.

(2) 손해배상청구

존속기간 만료 후 이미 소멸된 특허권으로 충분히 소멸된 침해행위
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진.

단, 손해·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행해야 한다 (민법 766조)



(3) 행위적 조치

그의 행위는 고의로 만료전의 그 행위에 대비하는 행위적 조치가 필수된다.

4. 조속한 만료 후 행위에 대한 조치

특히 강제 소액으로 이런 조치로 취할 수 없다.

- 이하 여백 -

[제1-1]

= 3.5
= 1.1

1. 사면조치

(1) 사면명고

사면명고를 통해 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충분하다.

(2) ~~가해행위~~ 정해금지가처벌, 가압류, 강제보전

무해배상청구서 제출의 보전이나 압류는 위반 증명인 할 수 있다.

2. 인사조치

(1) 정해금지 처분 - 특허법

정해금지 처분을 통해 그의 계속적인 정해행위 막을 수 있다.

(2) 무해배상청구 - 특허법

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다면 그의 무해이거나 그의 이익이익을 무해로 평가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3)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3. 형사적 조치

(1) 가해죄 - 특허법

그의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선고될 수 있다.



(2) 원수 양립가능

4. 기판구조

~~특정기술의~~ 특이 구조 구조 정확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보상금

2.5

설문(2)

1. 실시가능

특이적인 배합 혹은 공의성이 입수될 수 있으므로 경계사만 만 이 복 합 성 이 아 는 가 다.

2. 실시안 ~~특이~~ 실정 및 특이 한 양 수

특이로 특이 발명 A+B에 대한 실시안 실정 받 거나 특이 한 양 수 받은 방법이 있다.

3. 계정 특이 및 특이 성 이 아 는 특이 한 양 수

특이의 발명 A+B가 계정 특이에 대응 한다면 계정 특이 가 만 이 복 합 성 이 아 는 가 다.

특이의 발명 A+B+C가 특이의 발명 A+B에 비해 동등 한 기술 적 인 가 다 면 특이 한 양 수 받은 방법이 있다.



9. 기판판결.

양쪽 무의 특허권에 해가 있다면 무효성판 청구 등의 방법 통해
모든 모의사건은 방안 고려해볼 수 있다.

6.5

IV. 변론(3)

1. 진본성 - 법적 근거 요청

기술발전 및 상업적인 위해, 권리범역으로부터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상행발명 1(A)과 상행발명 2(B)로부터 방법 A+B+C.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 - 불명

A와 B로부터 A+B의 결합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데 발명명하다.

3. ~~이 특허권 수 있는 것이~~ 특허권 하나 관련 항변.

(1) 양면우회 항변 ~~불~~ - 취사제

특허권은 ~~특정~~ 일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성판에
의하여 ~~모~~ 효력된다. 이미 등록된 특허권인 이상, 무효성판이 확정
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고, 다른 법원에서 무효사건 수
없이 때문에 양면 우회 항변 불허한다.

(2) 권리범위 불명 - 취사제

~~특정~~ 특허권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권리범위 불명할 수 있다.

특허권



3. 2개의 다양한 경우

행진.

□영△



분 수 있다.

4. 형사상 권리

(1) 형사의 - 수권

제2항의 입회로 형사상 형식 또는 형사상 형식

소유권 수 있다.

(2) 형사상 권리

5. 가장

6.

II (선행 2)

<예1>

2. 침해 판단

(1) 목적어인 선 행위 - 침해

목적어인 선의 ~~행위~~ 그의 미보완성은 후의 특허권은 침해라는 행위이다.

(2) 목적어인 후 행위 - 방해

특허권의 목적어인 양호의 효력은 경제적으로 후행하는 후의 관에 대하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후행하는 후의 관에~~ 목적어인 선 후 행위에 대한 후의 관에

(1) 목적어인 후 행위에 대한 후의 관에

후행하는 후의 관행행위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후의 후행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2) 목적어인 선 행위에 대한 후의 관에

1) 침해금지권 - 복제. (원시제?)

침해금지권은 그 목적어인 특허권에 대한 금지권으로서

목적어인 양호 후 침해금지권 복제한다.

2) 손해배상권 - 기능 (원시제)

목적어인 양호 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권은 후의

배상권. 후행하는 기능이다.



3) 경쟁배치 - 가능

경쟁배치 신청여부는 경쟁자로 판단되므로 존속기간 안으로 하기
 대체 존속기간 안으로 경쟁배치 신청 가능하다.

4. 권리 범위

(1) ~~특허권 범위~~ 경쟁배치 권리 - 불가.

존속기간 안으로 경쟁배치 권리 불가하다.

(2) 출원배치권 - 가능.

특허권으로 권리의 귀속 주체에 의해 권리 범위가 특허권으로
 구분 되어 출원배치권 가능하다.

특허사건의 관여사항이 한정되어 출원 배치는 권리 범위로 특허권으로
 의해 출원배치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권리 이익에 특허권으로
구분에 의해 출원배치 가능할 수 있다.

상대방 권리상 입찰하면 특허권으로 11월 8일 출원 출원 배치 이시 배치
 출원배치 가능할 수 있다.

(3) 경쟁배치 - 제3자가 가능.

권리 제3자가 입찰하면 경쟁배치 신청하여 신청이후 명목 명목
 이차 배분 복여권 수 있다.

[아래서부터]